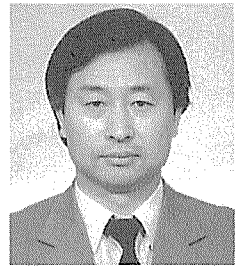


미국의 키폰 Anti-Dumping Case를 계기로 본 통상문제와 우리의 대응



崔 君 植
三星電子 通商管理 事業部長

1. 서 론

지난 1980년대 한·미간 무역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어 왔다.

하나는 한국경제 성장에 따른 지위의 상승으로 피수혜국의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인 동반자적 지위로의 상승이며, 또 하나는 이에 따른 심각한 무역마찰이다. 전자는 한국경제의 위상에 따른 자연적인 평가이나, 후자는 인위적인 요소... 미국의 무역적자 누증...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누증 원인을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보호조치를 준비해 두고 있다.

- 공정무역 규제 : 단순히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미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시 규제가능 (1974년 통상법 201조)
- 불공정무역 규제 : 덤핑 등의 불공정한 행위로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시 규제가능 (ANTI-DUMPING) 규제 제도)

이러한 미국의 규제제도상의 문제는 판정기

준의 “모호함”에 있으며, 이와 같은 모호한 판정기준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지난 '90.

1. 26일부로 반덤핑 규제가 발효된 한국산 키폰 CASE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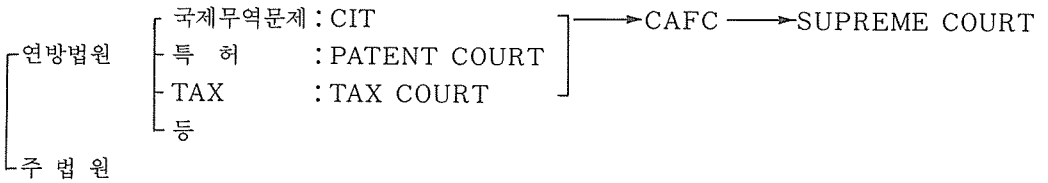
2. 한국산 키폰 CASE

1. 경 과

1988. 12. 20 미국의 거대 통신기기 업체인 AT&T사는 COMDIAL사와 합작으로 한국, 일본, 대만산 키폰(소형 전화교환기)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에 반덤핑 규제 제소를 하였으며, ITC(국제무역위원회)가 1990년 1월 26일 한국산 키폰에 대한 미국산업에 대한 피해혐의를 최종가결 함으로써 한국산 키폰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가 발효되었고, 한국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CIT(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 미국의 사법제도

참고적으로 미국에는 각주법에 따른 주법원과 연방법에 따른 연방법원으로 구분되며, 국제무역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도 CIT가 1심을 담당하고, 이에 이의가 있을시 CAFC(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 :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에 항소하게 된다.



2. ITC의 피해판정

ITC는 6인의 Commissioner가 찬·반 투표로 피해여부를 결정하며, 가부동수(3:3)인 경우는 피해로 결정된다.

한국의 키폰 Case의 경우도 3:3으로 결정되어 피해판정이 내려졌으나, ITC는 판정시 몇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판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 AT & T사의 피해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비록 AT & T사가 경영악화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해도 AT & T사의 경영악화가 한국산 키폰 수입에 의해 발생하였는지가 핵심요건이다. 실제적으로 AT & T사의 매출중 키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며, 더욱이 한국산 수출비중을 감안할 시 AT & T사의 경영악화가 한국산 키폰 수입에 기인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한국업체들은 AT & T사의 경영악화가 Marketing정책의 실패, 독점체제의 붕괴 등 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ITC는 이러한 증거들을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2) ITC는 "Rumor Killer Letter"를 기각했다.

이 Letter는 AT & T사의 Gus Blanchard가 AT & T사의 Small Business Telephone Division이 M/S 및 Profit을 잃고 있다는 Rumor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작성해 AT & T의 종업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으로 AT & T사가 키폰 분야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ITC는 이 서한의 지적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3) 미국의 키폰 시장은 제조업체인 AT & T가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업체 전

체로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5% 이상이며, 양국 합계 약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시장에서 미국업체와 일본업체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86년 경부터 정상적인 대미 키폰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시 단기간의 한국수출이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연결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ITC는 한국산 키폰에 대한 피해여부 최종판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적으로도 Commissioner들의 구두 표결시는 4:2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가 서면 표결시 3:3으로 변경하는 해프닝도 연출되었다.

3. CIT 제소

이와 같이 ITC의 한국산 키폰에 대한 피해판정은 논리적인 모순 등 한국업체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으로 1990년 3월 8일 한국전자공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한국업체는 공동으로 CIT에 제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업체의 CIT 제소는 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업체의 성숙도이다.

종래에는 수출업체로서 피해소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부당한 결정이나 조치에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전환의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업체들의 공동보조이다.

수출업체들이 상호 이전투구하는 모습으로 투영되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제는 대국적인 면에서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업체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인하여 향후 현지업체들의 무분별한 제소남발을 저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3. 결 론

미국은 단일국가로서는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임에 불구하고 무역적자의 누증으로 인하여 업계 및 의회로부터 무역규제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키폰 Case에서와 같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규제조치를 강행할 경우 이는 미국 스스로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업체 측면에서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다.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향은 냉정하고, 정확한 실무형의 접근이어야 하나, 보다 감정적이며 추상적인 정책형의 접근에 치우쳤다는 점도

있다.

또한 한국업체 스스로가 상호협조가 미흡하고 부당한 조치에도 정당한 항의 또는 구제절차를 강구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역으로 제소 및 규제조치의 남발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생각해야할 사항이다.

한국업체로서 해외시장은 성장과 연결되고 또한 '89년 GATT 18 조국 졸업으로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는 더이상 불가함으로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따라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하여도 끊임없이 해외시장은 개척 확대시켜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무역규제장벽을 필히 극복하여야 하는데 이의 대응주체로서 업계가 늦으나마 통상전문 부서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에 인식을 새롭게하고 선진각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입법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때 우리의 시장이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

